

7. □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: 정상적인 대화로 가능 하였던 어떠한 원치 않은 접촉이 고소인에게는 고소인이나 그/그녀의 가족에게 심각한 개인 폭력이나 신체적 상해를 위협하는 것과 같고 또 그런 위협이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것 같다고 믿기에 타당 하였음.

고로 다음과 같이 명령함:

-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
- 최종 스토킹 보호 명령 그리고 판결

8. □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안 구성원, 직계 가족 혹은 고소인에게 스토킹을 금지한다. 그리고 고소인의 집안 구성원이나 직계 가족 혹은 고소인과 접촉을 금하고 모든 접촉을 피해야 한다. 접촉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국한 되는 않는다:

- A.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행위;
- B. 다른 사람을 따라 다니는 행위;
- C. 다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직계 가족 및 집안 구성원의 학교, 직장, 사유지, 집 및 다음의 장소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: _____

- D. 다른 사람에게 서면 혹은 어떠한 형태의 전자 통신을 하거나 보내는 행위;
- E. 어떠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 하는 행위;
- F. 다른 사람과 통화 하는 행위, 제 삼자를 통하는 것을 포함;
- G.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행위;
- H. 다른 사람과 관계 있는 제 삼자와 그 제 삼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로 통화하는 행위;
- I. 다른 사람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사업 단체와 통화하는 행위;
- J. 다른 사람의 집, 사유지, 직장 혹은 학교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
- K. 다른 사람의 학교, 직장, 사유지, 혹은 집에 제삼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행위;
- L. 기타: _____

다음의 추가 명령이 있음:

임시 구제에 대한 전 내면 심리가 개최 됨:

9. 피고소인은 이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서 심리에 반드시 출석 하여야 하며

____ / ____ / ____ (날짜) 그리고 _____ (시간) 법정 번호 ____ 의 _____

카운티 법정에 왜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.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서는 _____ / ____ / ____ (날짜) 에 발행 됐고 피고소인에 대해 법정에 의해 종결 되거나 혹은 피고소인에 최종 스토킹 보호 명령서가 접수될 때 까지 강제 집행될 수 있음. 첨부 참조 “피고소인에 고지 그리고 심리 출두 명령.”

10. 아니오 법정이 고소인이 그런 명령에 대해 근거를 입증 하지 않았으므로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서를 발급함.

피고소인에게 통지 후 오늘 영구 구제에 대한 심리를 개최함 :

11. 연기

심리가 연기될 것임 ____ / ____ / ____ (날짜) 그리고 _____ (시간) 법정 번호 _____ 의 _____ 카운티 법정. 발행된 스토킹 보호 명령은 ____ / ____ / ____ (날짜) 이 심리전까지 유효함.

12. 현상금

피고소인이 출두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의 체포를 위해 현상금이 걸림. 현상금 책정액 \$5,000 / \$ _____.

13. 기각

발행된 스토킹 보호 명령서는 _____ / ____ / ____ (날짜) 에 종료 될 것이며, 법정은 고소인이 이 명령서를 위한 근거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고소장은 기각됨.
 고소인 출두 없음.

14. 자진 취하

발행된 임시 스토킹 보호 명령서를 _____ (날짜) 종료 될 것이며 법정은 고소인의 자진 청구에 의해 고소장을 기각함.

15. 최종 명령 및 판결

법정은 위 8번 항의 구체적인 금지 조건들을 지속할 것을 명령함. 이 명령은 최종 판결이며 법 이나 법정의 추가 명령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무기한 임.

16. 변호사 비용

ORS 30.866(4)(c) 조항에 따라, 고소인은 다음의 금액을 보상 받음 \$ _____.
 고소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한 다른 보상 명령: _____.

17. 정신 건강 감정

- 피고소인은 정신 건강 감정을 받을 것을 명령함 그리고 만약 치료나 감정에 의해 지적 되었다면.
- 피고소인이 감정이나 치료 혹은 둘 다 받을 자금이 없음. 피고소인은 추천됨

(정신 건강 기관): _____

18. 접수: 고소인 피고소인은 이 명령서 사본과 함께 법정에서 접수됨.

19. 생년 월일: 피고소인의 생년 월일은: _____

20. 42 USC § 3796gg(4)(e)조항에 의거 무기류 고지서: 이 명령의 결과로, 연방 정부 법 18 USC § 922 (g)(8) or (9)조항에 의거 피고소인이 무기류 및 탄약을 구입 하거나 운송, 선적, 수령 혹은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음. 이 명령서는 또한 ORS 348.282 조항에 의거 미합중국 군대에 봉사 하거나 법 기관에 취업 하는데 피고소인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.

[OJIN Event Code: NOGR]

피고소인에 알림: 만약 당신이 무기류 소지 및 구입이 연방 혹은 주 법에 불법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, 그리고/혹은 이 명령이 군대에 봉사 하거나 법 기관 취업에 있어 당신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, 당신은 변호사와 상의 하여야 함.

21. 총기 금지: 이 명령서에 의거 (혹은 원명령서가 지속된)피고소인이 무기류나 탄약 소지를 금지하며 그리고 주법에 의거 피고인에게 불법임. (OJIN EVENT CODE: FQOR)

무기류 증명서 (BRADY): 다음은 이 스토킹 보호 명령서가 연방 법 [18 USC § 921(a)(32); 8 USC § 922(g)(8)] 조항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 할 것을 강조함. 그래서, 이 스토킹 보호 명령은, 유효한 기간 동안, 피고소인이 무기류 및 탄약의 구입, 운송, 선적, 수령 혹은 소지에 관해 연방 검찰에게 복종 하게 할 수 있음. [OJIN Event Code: ORBY]

A. 관계: 이 스토킹 보호 명령서에 보호된 사람은:

(최소 하나 이상 체크 하시오)

- 피고소인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.
- 피고소인 자녀의 부모.
- 피고소인과 동성을 하거나 동성을 하였던 사람(성관계 동거)
- 피고소인의 자녀.
- 피고소인의 동반자의 자녀*(동반자란 배우자/전 배우자, 동성/전 동성자, 피고소인 자녀의 부모)

B. 참석을 위한 기회 및 고지:

- 이명령서는 피고소인이 실제 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리고 피고소인이 참석할 기회를 가진 뒤 심리 후에 발행 되었음.

C. 명령서 조항들:

□ 이 명령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이나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의 자녀/들 을 괴롭힘, 스토킹 혹은 위협 하거나 고소인이나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의 자녀/들 이 신체적 상해의 두려움을 느끼기에 타당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. **그리고**

□ 고소인 혹은 고소인및 피고소인의 자녀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나타낸다; 또한

□ 이 명령서는 고소인 혹은 고소인및 피고소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수있는 폭력을 가하거나 , 시도 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함.

22. 진실과 신용 조항: 이 명령서는 여자 권한 행동, 18 USC § 2265 에 대한 폭력 요구 조건과 모든 진실성에 부합 함. 이 법정은 당사자 관할 및 이 주제에 대해 배심함. 피고소인은 오레곤 주 법 도로 고지서가 전달 되거나 되었고 심리할 기회가 제 시간에 이루어 졌음. 이 명령서는 유효하며 이것과 다른 모든 배심에 강제 되도록 확정됨.

날짜: _____

판사 (사인)

판사의 서명 날인